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22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구합7492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37,179,980원¹⁾(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210,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장에는 37,179,87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포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시 B 토지분할 과정

○○시 B 임야 48,113㎡[이하 'C리 ○○(번지)'로 표시한다]가 2006년 5월 이후 분할, 합병 및 지목 변경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7. 7. 25. 기준 D, E 주변 토지의 공유물 분할 현황은 별지1 지적도와 같다.

표시	원인	표시	원인	표시	원인	표시	비고
B 임야 48,113㎡	2006. 5. 29. 분할	F 임야 39,110㎡	2006. 12. 7. 분할	G 임야 387㎡			
				H 임야 29,323㎡	2016. 9. 21. 분할	I 임야 3,107㎡ J 임야 2,585㎡	
			2012. 10. 16. 분할	D 임야 190㎡	2013. 1. 18. 지목변경	D 도로 190㎡	
				E 임야 7,181㎡	2016. 11. 18. 분할	K 임야 2,028㎡	2016. 11. 21. 공유물 분할로 원고 소유
						L 임야 1,409㎡	2016. 11. 21. 공유물 분할로 원고 소유
					2017. 2. 20. 분할	M 임야 364㎡	2017. 3. 2. 공유물 분할로 원고 소유
						N 임야 303㎡	원고와 Y이 공유
					2021. 10. 26. 지목변경	E 창고용지 3,077㎡	
					2022. 6. 16. 지목변경	E 공장용지 3,077㎡	
					2022. 10. 13. 합병	E 공장용지 3,313㎡	M에서 공장 용지 236㎡ 이기
		O 임야 503㎡					

나. 원고의 토지 취득

1) 원고는 2016. 8. 17. ① B 임야 8,500㎡²⁾ 및 ② H 임야 29,323㎡³⁾ 중 공유자

2) 위 토지는 ① 2016. 9. 21. 분할로 인하여 임야 2,310㎡를 T, 임야 1,430㎡를 U에 각 이기하였고, ② 2017. 6. 26. 분할로 인하여 임야 68㎡를 V, 임야 34㎡를 W에 각 이기하였으며, ③ 2017. 11. 29. 분할로 인하여 임야 2,329㎡를 X에 이기하였고, ④ 2018. 9. 11.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였다가, ⑤ 2019. 11. 27.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토지의 표시가 B 공장용지 2,329㎡로 최종 변경되었다.

3) 위 토지는 2016. 9. 21. 분할 이후 토지의 표시가 H 임야 23,631㎡로 변경되었다.



P의 지분 전부인 19/100, 공유자 Q, R의 각 지분 전부인 각 15.5/100를 매수한 다음, 2016. 8. 29.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주식회사 Y(이하 법인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6. 9. 21. S으로부터 D 도로 190㎡ 중 148/190 지분 및 E 임야 7,181㎡⁴⁾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원고 지분은 6/10, Y 지분은 4/10).

이에 원고는 2016. 10. 19. D 도로 190㎡ 중 44.4/95 지분, E 임야 7,181㎡ 중 6/10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Y은 같은 날 D 도로 190㎡ 중 29.6/95 지분, E 임야 7,181㎡ 중 4/10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와 Y이 공동으로 취득한 D 도로 190㎡ 중 148㎡(190㎡ 중 148/190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148㎡가 된다)와 E 임야 7,181㎡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D, E 토지의 분할 및 지분이전 과정 등

1) 원고는 2016. 10. 13. D 도로 190㎡의 44.4/95 지분 중 2/95를 Z에게, 각 5/95를 AA와 AB에게, 14/95를 AC에게 각 매도하고, 2016. 12. 2. 각 지분 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 임야 7,181㎡는 2016. 11. 18. E 임야 3,744㎡, K 임야 2,028㎡ 및 L 임야 1,409㎡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2016. 11. 21. Y에게 E 임야 3,744㎡에 관하여 2016. 11. 18.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자신의 지분 중 일부인 1,374.8/3,744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Y으로부터 K 임야 2,028㎡⁵⁾, L 임야 1,409㎡에 관하여 각 2016. 11.

4) 위 토지는 ① 2016. 11. 18. 분할로 인하여 임야 2,028㎡를 K, 임야 1,409㎡를 동소 L에 각 이기하였고, ② 2017. 2. 20. 분할로 인하여 임야 364㎡를 M, 임야 303㎡를 N에 각 이기하였으며, ③ 2021. 10. 26.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였고, ④ 2022. 6. 16.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⑤ 2022. 10. 13. 합병으로 인하여 공장용지 236㎡를 M에서 이기하여 토지의 표시가 E 공장용지 3,313㎡가 되었다.

5) K 임야 2,028㎡는 2016. 11. 18. E에서 이기되었고, 이후 2018. 8. 17.에 임야 32㎡를 AR에 이기함으로써 그 면적이 1,996㎡



18.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4/10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이로써 K 임야 2,028㎡, L 임야 1,409㎡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4) E 임야 3,744㎡는 2017. 2. 20. E 임야 3,077㎡, M 임야 364㎡, N 임야 303㎡로 분할되었다.

5) 원고는 2017. 3. 2. Y에게 E 임야 3,077㎡ 중 871.6/3,744 지분에 관하여 2017. 2. 28.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Y은 원고에게 M 임야 364㎡ 중 2,872.4/3,744 지분, N 임야 303㎡ 중 302.26/3,744 지분에 관하여 2017. 2. 28.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로써 E 임야 3,077㎡는 Y의, M 임야 364㎡는 원고의 각 단독소유로 되었고, N 임야 303㎡는 여전히 원고와 Y의 공유로 남았다).

6) 원고는 2016. 12. 2. AC에게 K 임야 2,028㎡, AA에게 L 임야 1,409㎡에 관하여 각 2016. 10.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원고는 2017. 4. 6. AC에게 M 임야 364㎡ 중 2,520/3,744 지분에 관하여 2017. 3. 2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M 임야 364㎡는 2018. 8. 17. M 임야 236㎡, AS 임야 116㎡, AT 임야 12㎡로 분할되었다.

9) 원고는 2019. 3. 8. M 임야 236㎡에 관하여 Y에게 2019. 3. 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2022. 6. 16.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2022. 10. 13. M 공장용지 236㎡는 E에 합병되었다.

라.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로 줄어들었다.



1)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을 제출하여 2016. 9. 30. ○○○○○○-공단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통보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협동화 사업'이라 한다), 그 승인에 포함된 참가업체(이하 '이 사건 참가업체'라 한다) 등 승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사업추진개요

1.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원고 등 거래관계에 있는 6개사가 참여하여 공장집단화를 통한 자가사업장 확보와 더불어 생산성향상, 품질경쟁력 확보, 물류비절감 및 원가절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목적

나. 사업개요

추진주체명	AD	대표자	Q
사업추진유형	집단화		
사업예정지	B		
참가업체수	6개	업종	제조업
사업장 규모	대지	18,033㎡ (5,455평)	
	건물	13,234㎡ (4,003평)	
투자규모	총사업비	15,695백만원	공동 15,695백만원
	중진공 융자	7,293백만원 46.5%	공동 7,293백만원 46.5%
	자기자금	8,402백만원 53.5%	공동 8,402백만원 53.5%
사업추진기간	2016. 9.~2017. 8. (12개월)		
대출 및 담보방법	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부 대리대출		

2. 추진주체 운영계획

- 공동부분이 없는 단순 집단화 사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주체로 참여하며 추진주체의 대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취임
- 협동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가업체들이 건설업체를 공동 선정, 시행하고 입주 후 상호 수발주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을 실시하여 상호협력을 증진할 계획

II. 참가업체 적격평가 결과

1. 참가업체 현황

순번	업체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비고
1	원고	○○시 AE	2002. 1. 17.	포장지	대표
2	AF	○○시 AG	2013. 2. 27.	포장지	
3	Z	○○시 AH	2012. 9. 17.	덕트	
4	AB	○○시 AI	2015. 8. 15.	포장지	
5	AA ⁶⁾	○○시 AJ	2012. 11. 20.	침구류	
6	AC	○○시 AK	2008. 7. 10.	복합기	



2) 이 사건 협동화 사업은 대출을 위한 목적이어서, ○○○○○○공단은 실천계획 이후 별도로 실천계획대로 사업장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처분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취득에 대하여 2016. 10. 19.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였고, 2016. 10. 21.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의 75/100를 감면받았다.

2) 피고는 2020.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취득일(2016. 10. 19.)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20. 9. 15.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37,179,98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210,090원 합계 40,390,0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2020. 11.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1. 8. 3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3, 4,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

6) 이 사건 참가업체 중 AA는 2018. 9. 3. AL로 변경·승인되었다.



분은 위법하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은 '분양 또는 임대'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참가업체 중 일부로 하여금 향후 공장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이 정한 '분양'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참가업체에 토지를 양도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4항의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오염총량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로분할 과정이 복잡하여 공장 설립이 지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감면추징 배제요건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4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다. 원고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려는 이 사건 참가업체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해당 업체가 실제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했는지는 원고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 업체의 사후 사정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도로 190㎡는 2013. 1. 18.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2013년 3월 항공사진에 따르면 도로로 이미 개발되었다.

2) 원고 등 이 사건 참가업체, Y은 AM측량설계사무소와 사이에 2016. 12. 6.부터 2017. 1. 10. 사이에 별지1 지적도 중 각 소유 토지에 관하여 공장, 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AL는 2017. 8. 28. AA로부터 L 임야 1,409㎡를 매수한 다음, 2017.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L는 2018. 1. 4. AM측량설계사무소와 사이에 L 외 2필지 소재 대지면적 2,480㎡에 관하여 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AN는 2019. 2. 28. AC로부터 K 임야 1,996㎡⁷⁾를 매수한 다음, 201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N는 2019. 11. 18. AM측량설계사무소와 사이에 K 소재 대지면적 2,055㎡에 관하여 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게 B, O, AO, AP 토지 지상 3,322㎡에 기타인쇄관련산업을 위한 공장신설을 승인하였다.

6) AN는 2021. 11. 15. E, K, M AQ호동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3층 창고시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2. 5. 4. 위 창고시설의 용도를 3층 공장으로 변경하였다.

7) AL는 2022. 4. 4. L에 있는 AU동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2층 창고시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

7) K 임야 2,028㎡는 2016. 11. 18. E에서 이기되었고, 2018. 8. 17. 임야 32㎡를 AR에 이기함으로써 그 면적이 1,996㎡로 줄어들었고, 2019. 8. 14. 임야 83㎡를 AV에 이기함으로써 다시 1,913㎡로 줄어들었다.



업진흥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100를 2017. 12. 31.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4항에서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구 중소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에 따른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E 임야 7,181㎡ 중 원고의 6/10 지분에 관하여

가) 공유관계의 해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Y은 2016. 10. 19. E 임야 7,181㎡를 공유로 취득하였고, 2016. 11. 21. 및 2017. 3. 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서로 마



쳤다. 공유물 분할 후 E 임야 3,077㎡는 Y의 단독 소유가, K 임야 2,028㎡, L 임야 1,409㎡, M 임야 364㎡는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N 임야 303㎡는 여전히 Y과 원고의 공동소유로 남았다.

나) 이 사건 참가업체인 AC와 AA에 매도한 부분

(1) 원고는 위 K 임야 2,028㎡, L 임야 1,409㎡를 2016. 12. 2. 이 사건 참가업체인 AC와 AA에게 각 매도하였고, 2017. 4. 6. M 임야 364㎡ 중 2,520/3,744 지분을 AC에게 매도하였다. AC와 AA는 이 사건 참가업체이고 협동화 계획에서 참가업체의 취득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가 위 업체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것 자체를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이 승인받은 이 사건 협동화 사업의 지적도상 K 임야 2,028㎡ 지상에는 AC가 공장을 건립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AC는 2016. 12. 2. K 임야 2,028㎡를 취득한 다음 약 2년 4개월 후인 2019. 2. 28. 위 부동산을 이 사건 참가업체가 아닌 AN에게 매도한 점, ③ AN는 2019. 11. 18. AM측량설계사무소와 사이에 K 일원 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11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토지에 창고시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④ 원고 등이 승인받은 이 사건 협동화 사업의 지적도상 L 임야 1,409㎡ 지상에는 AA가 공장을 건립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AL가 2018. 9. 3. AA의 지위를 양수하여 이 사건 참가업체로 변경·승인되었으나, AL는 2022년 4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토지에 창고시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⑤ M 임야 364㎡는 E 임야 3,077㎡의 주변 토지로서 이 사건 협동화 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2017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 근처에는 어떠한 공장건물이나 시설물 등이 건축되어있지 않았고, 원자재 등도 적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한하여 1회 허용되는데 토지 취득시에는 해당 토지가 공장용으로 사용되는지 용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협동화 계획의 특성상 참가업체의 사용까지 고려하여 감면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업체가 공장설립을 지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오염총량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거나, 도로 분할 과정이 복잡하여 공장 설립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규제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기간 내 이 사건 토지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AC는 K 토지를 이 사건 참가업체가 아닌 업체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참가업체인 AL도 원고의 최초 토지 취득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사업장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직접 소유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0. 19.경



까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M 임야 364㎡ 중 AC에게 처분하고 남은 1,224/3,744 지분 및 N 임야 303㎡ 중 1173.86/3,744 지분은 제3자에 처분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였다.

그러나, M 임야 364㎡는 E 임야 3,077㎡의 주변 토지로서 이 사건 협동화 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2017. 10.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 근처에는 어떠한 공장건물이나 시설물 등이 건축되어있지 않았고, 원자재 등도 적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N 임야 303㎡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이 부분 각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D 도로 190㎡ 중 원고의 44.4/95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6. 10. 19. D 도로 190㎡ 중 44.4/95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 12. 2. 위 지분 중 일부를 이 사건 참가업체인 Z, AA, AB, AC에게 각 이전한 사실, D 도로 190㎡는 2013. 1.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도로로 이미 개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지적도 현황에 따르면 D 도로 190㎡는 이 사건 협동화 사업 단지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위 도로의 지분 중 일부를 이 사건 참가업체에게 양도한 경우는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협동화실천계획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취득한 공장용지에 인접한 도로는 공장용지와 일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



에서 필요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를 별도로 취득세 감경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 등 사업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취득세를 함께 감경받은 E 임야의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D 도로 190㎡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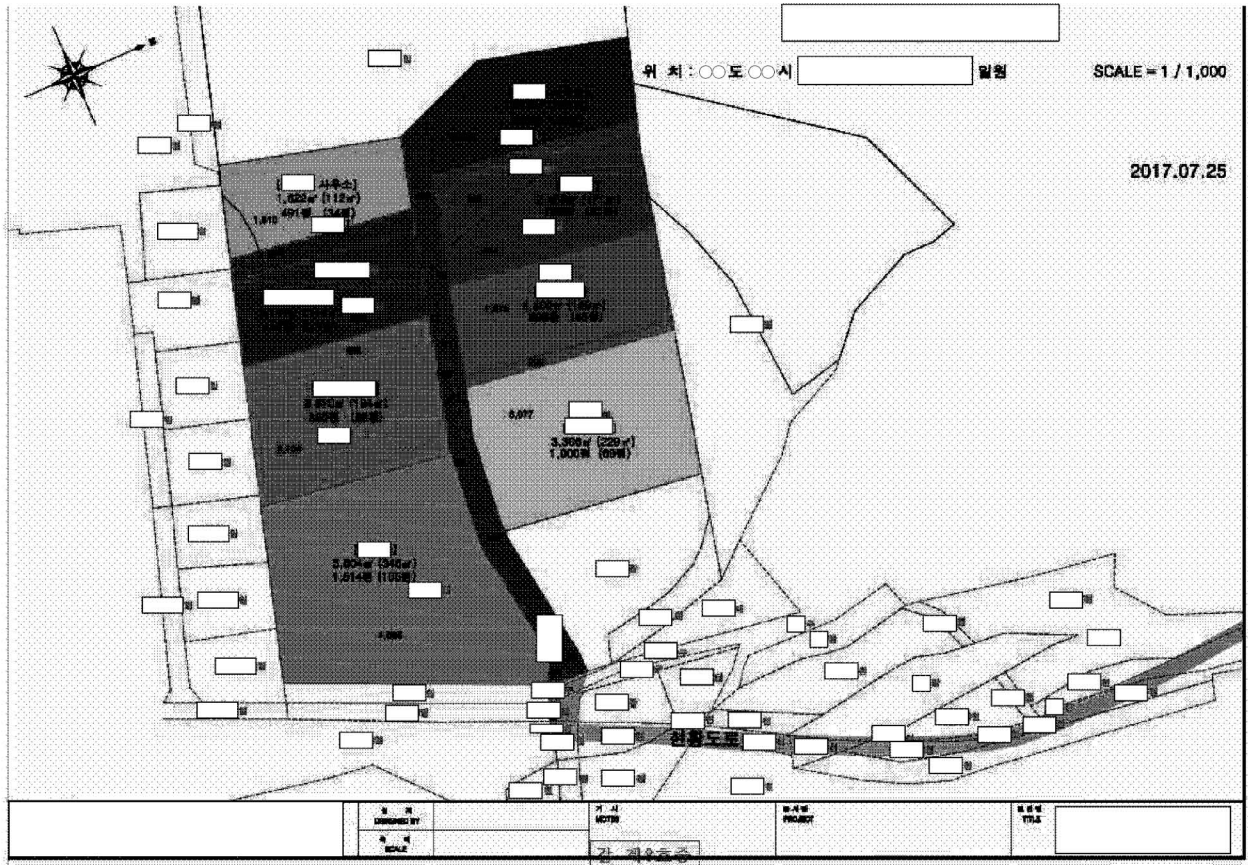
판사 박○○

판사 송○○



별지1

지적도



끝.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 각각 경감한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

■ 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산업·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끝.